제104차 ILO 총회 참석 결과 보고

2015. 6.



고용통계과

목 차

I. 제104차 ILO 총회 개요 ······· 1
Ⅱ.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권고 제정 2
Ⅲ. 공식경제로의 전환 권고 주요 내용 5
Ⅳ. 공식경제로의 전환 위원회 주요 내용 7
V. 검토사항 ····································
[참고1]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권고 전문(국문) … 12
[참고2]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권고 전문(영문) … 23

제104차 ILO 총회 개요

① 주관기관: ILO(국제노동기구)

② 참가기간 : 2015.6.1(월)~6.5(금) * 회의는 6.1~6.13

③ 장소 : 스위스 제네바 UN 구주본부 및 ILO

4 참석자 : 고용통계과 김경희 사무관

[5] 참석위워회 :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화*

* Committee on the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 < 제104차 ILO 총회 개요 > -

1. 영문명: 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

2. 참석자 : 185개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 및 실무자 2,920명

ㅇ 우리나라 : 고용노동부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등 33명 참석

- 3. 회의일정(6.1~6.13)
 - **노사정 그룹별 예비회의** : 5.31(일)
 - 개회식 : 6.1(월) 11:45
 - * 노사정 대표단 참석. 총회 의장 선출 및 의제별 위원회 구성
 - **위원회** : 6.1(월)~6.10(수)
 - * ① 기준적용위원회(6.1~6.10), ②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위원회 (6.1~6.10), ③ '중소기업과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위원회(6.1~6.10),
 - ④ '근로보호(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위원회(6.1~6.10), ⑤ 재정위원회(6.3)
 - **본회의** : 6.4(목)∼6.12.(금)
 - * 사무총장 보고서『일의 미래』발표 후 각국 노사정 대표단의 연설
 - 6.10(수) 오전 : 고용노동부장관.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연설
 - 6.10(수) 오후 : 경총 박병원 회장 연설
 - **폐회식** : 6.13(토)

6 주요일정

일자	주요 일정						
5.31(일)	인천 출발 → 스위스 제네바 도착						
6.1(월) ~5(금)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위원회 참석						
	① 권고안 조문 심사 - 노사정이 제출한 수정안 논의 및 권고 확정						
	② ILO 통계담당자 면담(Ms. Elisa Benes) - 2013년 권고에 대한 매뉴얼 작성 계획, ILO 기준 고용 보조지표의 작성 국가 여부, 고용통계 특성 등을 논의						
6.6(토)~ 7(일)	스위스 제네바 출발 → 인천 도착						

Ⅱ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권고 제정

[] 연혁

- ILO는 국제노동통계인총회^{*}를 통해 비경제경제^{**}와 비공식취업자^{***}에 대한 권고안을 제정하고 측정매뉴얼 작성^{****}
 - * ICLS(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고용통계를 담당하는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국제기준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로 매 5년마다 ILO가 주최
 - ** 제 15차 ICLS(1993년) *** 제17차 ICLS(2003년)
 - **** Measuring informality(A statistical manual on the informal sector and informal employment, 2013)

② 추진배경

- 제317차 이사회(2013년 3월)에서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권고 채택을 2014~2015년 ILO 총회 의제로 결정
- ILO 사무국에서는 2013년 12월 회원국 노사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 마련

- 비공식경제의 취약집단, 범위, 대상, 정책수립시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화
 - ① 비공식 경제의 취약집단: 여성, 청년, 이주근로자, 고령근로자 등
 - ② 비공식경제의 범위 : 불법행위 미포함
 - ③ 비공식경제의 대상: 자영업자, 사업주, 가족종사자
 - ④ 국가별 정책 수립시의 고려사항: 성장전략, 규제환경, 기본권 신장, 직업능력 향상, 사회적 대화, 차별 폐지, 사회적 보호의 확대 등

③ 추진경과

- 2014년 제103차 총회에서 권고(안)에 대한 1차 초안 심사
 - 조문별 심사 및 노사정 협의 결과에 따른 문구 수정
 - 제103차 총회 논의에 대한 권고(안) 마련(2014년 8월)
 - ※ 제 103차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위원회 참석자: 고용노동부 김재훈사무관,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연구위원, 경총 전문위원, 한국노총 간사 등 참석
- 2015년 3월 수정권고안 마련
- 2015년 4월 재수정권고안 마련

4 고용통계과 의견 제출

- (2014년 8월 권고안) 비공식경제를 파악이 어려우므로 노사정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방법 적용 필요성 추가 요청
 - ⇒ (ILO) 우리나라, 네덜란드,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등이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문구를 수정권고안(파란색표지1)에 추가
- (2015년 4월 권고안) 정확한 비공식부문의 취업자 측정을 위해 최근 고용통계 개정기준(제19차 ICLS 권고*) 명시 필요
 - ⇒ 올해 제104차 회의 중 조문심사안건으로 제출하여 논의하여 수정조문으로 채택
 - *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work, employment and labor underuti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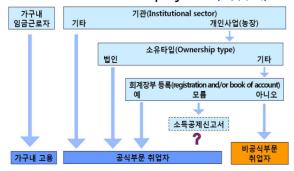
비공식경제(Informal Sector) 및 비공식취업자(Informal employment)

- (비공식경제 정의: '93년 제15차 ICLS)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면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단위(unit)로, 노동과 자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조직구성으로 공식적 계약관계가 아닌 것에 주로 의존
 - **(6개 기준)** ① 법적조직 ② 소유권 ③ 계정 ④ 생산목적 ⑤ 산업 ⑥ 규모
 - 비공식경제의 취업자(=비공식부문 취업자 + 비공식부문 외의 비공식취업자)
- (비공식취업자 정의: '03년 제17차 ICLS) 제 15차 기준에 따른 비공식 취업자 포착이 어렵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구분이 어려운 직업군 등장, 고용계약의 다양화 등으로 기존 권고안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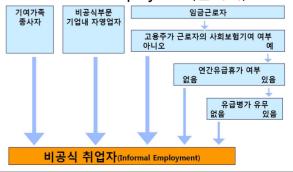
생산 단위 구분	종사상 지위별 직업(Jobs by status in employment)								
	자영자		고용자		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협동조합회원	
	비공식	공식	비공식	공식		비공식	공식	비공식	공식
공식 부문					1	2			
비공식 부문	3		4		5	6	7	8	
가구 ¹⁾	9					10			

- 1) ①자가소비용 물건생산 가구 + ②유급가사종사자를 고용하는 가구
- 2) 짙은 음영은 존재하지 않는 구분이며, 옅은 음영은 공식취업자
- 3) 비공식취업자(Informal employment) = 1~6, 8~10 비공식부문 취업자(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 3~8 비공식부문 외의 비공식취업자(Informal employment outside the informal sector) = 1,2,9,10
- (국제사례) 제 17차 권고에서 통계작성기준을 국가상황에 따라 조정할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별로 사회보장시스템, 고용계약, 고용시장환경 등이 상이하여 비공식취업자 자료를 작성한 나라마다 측정기준이 다양함
 - ILO(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농업중심, 개발도상국가에서 비공식 취업자가 전체 비농림어업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
 - * 인도 85.1%, 필리핀 70.1%, 베트남 68.2%, 브라질 51.1%

< Informal sector employment(사업체) >



< Informal employment(일자리) >



Ш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권고 주요 내용

① 구성

서문, 1장~9장(전체 42조), 부록(관련 협약 및 권고)으로 구성 (참고1 국문번역全文)

② 장별 주요 내용

(1) 목적과 범위 : Objectives and scope

- 비공식 경제는 법적 또는 관행적으로 공식경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충분히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및 경제주체에 의한 모든
 활동으로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발생
- ㅇ 비공식경제내에서 경제단위를 소유 및 운영하는 자로서 아래를 포함
 - (a) 자영업자, 사업주,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혹은 사회연대적 경제단위의 구성원
 - (b) 공식 또는 비공식경제 내 경제단위에서 일하며 기여가족 종사자
 - (c) 하도급 및 공급사슬을 포함하는 공식부문 기업 또는 비공식 경제 내 경제단위에서, 혹은 가정에 고용된 유급가사근로자 로서 비공식 일자리를 가진 임금근로자
 - (d) 미등록이거나 규정 밖의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2) 기본원칙: Guiding principles

- 비공식경제에서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사회적으로 일관되고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비공식경제내의 모든 이의 인권을 보호하며, 특히 취약대상자에 대한 관심 및 주의 요구

(3) 법률 및 정책프레임워크 : Legal and policy frameworks

○ 모든 범주의 근로자 및 경제단위를 적절히 포함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규 또는 정책 채택, 검토 및 시행 필요

(4) 고용정책 : Employment policies

○ 노사정 협의를 기반으로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제122호, 1964)에 따라 고 용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롭게 선 택하는 양질의 고용을 국가 발전 및 성장전략으로 설정

(5) 권리와 사회적 보호: Right and social protection

 비공식경제 종사자의 근로기본권보장, 근로조건개선, 사회보호 안전망 구축 등에 노력

(6) 인센티브, 준수 및 집행: Incentives, compliance and enforcement

○ 등록, 조세, 법규 등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적극적인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며, 효과적인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7)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결사의 자유, 사회적 대화 및 역할 Freedom of association, social dialogue and role of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

 비공식경제 종사자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누리도록 보장하며, 노사정은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8)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Data collection and monitoring

○ 국가상황에 따라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전진을 모니터링하며, 통계작성의 기준은 제17차 ICLS 권고 및 후속 개정기준 적용

(9) 이행: Implementation

 국가관행에 따라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동 권고의 어떤 부분도 기존의 ILO 협약 및 권고에 의해 비공식경제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보호의 축소해석은 불가

IV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위원회 주요 내용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Mr V. Seafield(남아프리카 정부 대표)
- 0 부위워장
 - Mr A. Frimpong(가나 사용자 대표)
 - Mr P. Dimitrov (불가리아 근로자 대표)
- 참석자 : 185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
 - * 위원장 기준으로 중앙은 정부, 왼쪽은 사용자, 오른쪽은 근로자 착석

② 우리나라 참가자

- 정부 : 통계청 김경희사무관, 고용노동부 천경기사무관
- ㅇ 노사 : 민간변호사 정소연, 경총 전문위원 손연주 등

③ 핵심요지

○ 2014년 제 103차 회의에서 논의하여 만든 「비공식경제의 공식 경제로의 전환」권고안(초안)에 대한 각 조문별 심사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채택(6.12 투표, 6.13 채택)

4 회의 진행

○ (6.1일) 위원장 및 위원회 선출, ILO 사무국의 그동안 추진경과 및 발언예절 설명, 노사정대표 연설(사용자, 근로자, 정부 순서)

【 ILO 사무국 발언 요지 】

- 전세계 근로자의 50%가 비공식경제에서 일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의 91%, 영세기업의 대부분은 비공식경제에 해당
- 비공식, 빈곤, 양질의 일자리부족, 고용시장의 제한된 접근, 취약성 등이 불공정한 경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은 미래일자리와 양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동 권고는 비공식경제의 전반을 아우르는 최초의 국제기준이며, 법적 기반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침과 정책선택을 제공
- (6.2일) ILO 사무국의 조문심사절차 및 수정안신청방법 설명, 회원국별(미국,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현황 소개
 - (미국) 노사정 협의로 제정되는 동 권고안은 회원국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영세사업체의 공식경제로 전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고용자에게 이익
 - (중국) 권고안의 전반에 대해 찬성하며, 권고안이 특히 중소 기업의 사회안전망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 농업과 건설업에 비공식취업자가 많아 전체노동력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공식경제로의 전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필리핀) 75%가 비공식부문의 취업자로 권리보호 시급성 강조
 - (콜롬비아) 전체노동력의 48.3%가 비공식경제부문이며, 최근 자국 정부의 고용증진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
- (6.3~5일) 1~42개 조문별로 논의하고 채택하며, 이미 채택한 조문 의 추가삭제는 불가
 - 노사정그룹은 권고 조문별로 사전에 신청한 다양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노사정 의견 수렴 후 결정
 - 토론과정에서 보충수정안(sub-amendment)이 최대 5개까지 제 시되었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채택을 익일로 연기

5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활동

- (공식활동) 비공식경제 위원회 참여
 - 조문수정안제출 : 단독(37조 b항, 자료수집), 공동(8~9조, 조문 위치변경)
 - 타국 개정의견에 대한 반대 발언으로 기존 조문 유지 : 제20조 (사회보장 확대), 제36조 a항(자료수집 유보사유)
- (비공식활동) IMEC*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소그룹미팅**을 구성 하여 공식 일정과 관계없이 조문별 의견 교환, 국가별 상황 이해
 - * Industrialized Market Economy Countries
- ** 8개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

6 조문별 주요 토론 요지

- 전체 :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통계청) 의견수렴결과, 일반적인 내용으로 대부분 조문 수용가능
 - 다만, 근로계약, 노동조합, 자영업자(특수고용)등의 전환, 불법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에 있어서는 기권
- 제6조 : "according to national practice" 관련하여 회원국 노사정은 장시간 논의 끝에 동 문구를 존치하기로 합의함
 - (근로자그룹) 국가상황은 여지가 있어 삭제를 희망
 - (사용자그룹) 근로자가 살고 있는 것은 타국이 아닌 자국에 살고 있으므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지가 타당
 - (정부그룹) 동 권고안은 공동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적 관행을 무시한 일괄적인 표현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
- 제8~9조: 문장의 흐름을 고려하여 조항 위치를 교체
 - 노사정 그룹 모두 찬성하여 수정안을 채택

- 제11조(f): discrimination 뒤에 'and gender-based violence' 추가 요청(근로자 단체)
 - 차별 개선의 총론에서는 찬성하지만 문구수정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
 - 최종적으로 'and violence, including gender-based violence, at the workplace'로 수정안을 채택
- 제15조 : 노사정 협의를 통한 포괄적 고용정책프레임을 설명하고 있어 여러 논의를 통해 조문의 자구수정 및 추가
- 제18조(f): 'minimum living wage'에서 'living' 존치여부
 - 사용자 그룹, 아프리칸 그룹, 미국, 스위스는 'living'의 삭제요구
 - EU는 '존재한다면, 최저임금으로' 할 것을 요구
 - 근로자대표는 'minimum living wage'기준은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강력하게 존치 요구
 - 기준설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므로 최저생활임금 기준이 없는 국가상황을 고려하여 문구 수정으로 의견합의
- ㅇ 제27조 : 근로감독범위의 제한이 필요
 - 전체 근로감독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동 권고안 취지에 따라 비공식경제로 제한하는 문구 추가
- ㅇ 제37조 : 비공식경제 규모의 설정 기준
 - 스위스와 캐나다는 비공식경제의 규모와 특징에 관한 통계 생산의 기준이 되는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이후의 문장을 모두 삭제를 건의
 - 우리나라는 'and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in 2013'을 추가하여 제17차 개정(2003년) 이 후 변경사항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

- 근로자대표, EU국가, 미국, 아프리카, 멕시코 등이 우리나라 의견을 지지하여, 앞으로도 국제기준 개정 가능성을 포함하는 '이후 개정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 확정

ㅇ 서문수정

-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새로운 서문을 제시
- 정부는 문구 수정과 문장 위치 조정 등의 의견 제출
- 지난해에 이미 초안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정부 그룹 수정안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 합의

Ⅴ 검토 사항

- 일부 국가에서도 자국의 비공식경제 및 취업자 규모를 측정하고 있으며,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권고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측정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
- Post2015 추진, 국제협력활동, 선진통계기관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청도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통계 개발이 필요
 - 개념정립,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의 포괄범위 차이 보완 등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 추진

참고1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권고(국문)

서문

- 비공식경제의 발생은 핵심노동권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 사회적 보호 및 양질의 근로조건, 포용적 발전, 법치 등 모든 면에서 주요 도전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발전, 재정수입, 특히 경제·사회·환경정책에 관한 정부의 활동 범위, 제도의 건전성, 국내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이 아닌, 공식경제 내 기회부족의 영향, 그리고 다른 생계유지수단의 부재로 비공식경제에 유입됨을 인정하고
- 양질의 일자리 부족, 즉 핵심노동권의 부정, 충분한 양질의 고용기회의 부재, 불충분한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대화의 부재가 비공식경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상기하며
- 비공식이 거버넌스와 구조문제 등 여러 원인을 가지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정책이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 음을 인식하고
- 필라델피아 선언(1944년), 세계인권선언(1948년), ILO의 근로자 기본권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년), ILO의 사회정의선언(2008년)을 상기하며
- 부록에서 명시하고 있는 ILO의 기존협약, 국제기준 및 UN협약의 적절성을 재확인하며,
- 제90차 ILO총회(2002년)에서 채택된 양질의 일자리와 비공식경제에 관한 결의안과 결론을 상기하고
-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이 포괄적인 개발을 실현하고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임을 확인하며

- 회원국이 현 생활수준의 개선을 확보하면서 비공식경제 내 근로자 및 경제단위의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시급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촉진에 있어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 체가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하며
- 총회 의제의 다섯 번째 안건인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과 관련 하여 제안 채택을 결정하고
- ㅇ 이러한 제안이 권고의 형태를 취한다고 결정하며

2015년 6월 12일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권고(2015)라고 불릴 다음의 권고를 채택한다.

I. 목적과 범위

- 1. 동 권고는 회원국에 다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a) 근로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소득안정, 생계유지 및 기업가정신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공식경제 내 근로자 및 경제단위의 공식경제로의 전환 촉진
- (b) 공식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존 및 지속가능성과 거시경제, 고용, 사회적 보호 및 그 외의 사회정책과의 일관성 도모
- (c) 공식경제 내 일자리의 비공식화 예방
- 2. 동 권고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비공식 경제"라는 용어는,
- (a) 법적 또는 관행적 공식경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충분히 포함되 지 아니하는 근로자 및 경제단위에 의한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 (b) 불법행위, 특히, 관련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마약 불법 생산 및 밀매, 화기 불법 제조 및 밀매, 인신매매, 돈세탁 등 법으로 금지되는 서 비스의 제공 또는 재화의 생산, 판매 또는 소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 3. 동 권고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비공식경제 내 "경제단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임금노동을 활용하는 단위
- (b) 홀로 혹은 무급 가족종사자의 도움을 받아 개별 자영업자가 소유하는 단위
- (c)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혹은 사회연대적 경제단위
- 4. 동 권고는 기업, 기업가 및 가내를 포함한 비공식경제 내 모든 근로자 및 경제단위, 특히 다음에 적용된다.
- (a) 비공식경제 내에서 경제단위를 소유 및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을 포함 한다.
 - (i) 자영업자
 - (ii) 사업주
 - (iii)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혹은 사회연대적 경제단위의 구성원
- (b) 공식 또는 비공식경제 내 경제단위에서 일하는 기여가족종사자
- (c) 하도급 또는 공급사슬, 가구내 유급가사근로를 포함하는 비공식경제 또는 공식기업내(또는 목적)의 비공식 일자리
- (d) 미등록이거나 규정 밖의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 5. 비공식경제 근로는 모든 경제부문에 걸쳐 공공 영역 및 사적인 영역에 서 이루어질 수 있다.
- 6. 상기 제2~5항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회원국들의 비공식 경제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 있는 당국은 동 권고에 기술된 비공식경제의 성격과 정도 및 비공식경제와 공식경제와의 관계를 규정해야한다. 이를 통해, 권한 있는 당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사정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 가장대표적인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는, 국가적인 관행에 따라, 비공식경제 내 대표적인 회원제 기반 근로자단체 및 경제단위단체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II. 기본원칙

- 7. 비공식경제에서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일관되고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회원국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a) 비공식경제 내 근로자와 경제단위의 다양성, 다양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방식
- (b)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별상황, 법률, 정책, 실천의 우선순위
- (c)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략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 (d)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정책분야에 걸친 일 관성 및 조율의 필요
- (e) 비공식경제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의 인권에 대한 효과적인 증진과 보호
- (f) 법과 관행상 근로기본권의 존중을 통해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달성
- (g) 특정 정책분야에서 지침을 제공하는 최신 국제노동기준(부록참조)
- (h) 양성평등 촉진 및 차별 철폐
- (i) 여성, 청년, 이주근로자, 고령근로자, 토착민 및 부족민, HIV 혹은 AIDS 감염자, 장애인, 가사근로자와 자급 농민 등 비공식경제 내 가장 심각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특히 취약한 대상에 각별한 관심 및 주의를 기울일 필요
- (j) 공식경제로의 전환 중 비공식경제 내 근로자 및 경제단위의 기업가적인 잠재력, 창의력, 역동성, 능력 및 혁신역량의 보존 및 확대
- (k) 인센티브 및 준수 수단을 통합하는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
- (I) 공식경제로부터의 조세 및 사회노동법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이탈에 대한 예방과 제재의 필요

III. 법률 및 정책프레임워크

- 8. 회원국은 근로자와 경제단위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법규와 규정을 검토해야한다
- 9. 회원국은 모든 범주의 근로자 및 경제단위를 적절히 포함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규 혹은 그 외 정책을 채택, 검토 및 시행해야 한다.

- 10.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부역할을 고려하여 국가 발전전략 혹은 계획 혹은 빈곤감축전략이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통합정책프레임워크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 11. 동 통합정책프레임워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 (a) 공식경제 내 포용적 성장전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b) 적절한 법률 프레임워크 구축
- (c) 기업 및 투자에 도움이 되는 환경 도모
- (d) 핵심노동권의 존중, 증진 및 실현
- (e) 사회적 대화 장려를 위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조직화 및 대표성 확보
- (f) 평등의 증진, 직장내 성관련 폭력, 차별 폐지
- (g) 기업가정신, 영세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그 외 사회적 또는 사회연 대적 경제단위 등 다른 형태의 기업모델 및 경제단위 장려
- (h) 교육,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접근성
- (i) 포용적인 금융부문을 장려하는 규제프레임워크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 (j) 비지니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k) 시장 접근성
- (l)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
- (m) 부문별 정책 장려
- (n) 사회보호최저선이 부재한 곳에 사회보호최저선 구축 및 사회보장 적 용범위 확대
- (o) 자급형 생계를 위한 공공 공간과 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를 포함한 도농지역개발전략 장려
- (p)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
- (q)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근로감독
- (r) 적절히 수립된 최저임금정책 등 소득보장
- (s) 사법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성
- (t) 국제협력 메커니즘

- 12. 통합정책프레임워크 구축 및 이행 시, 회원국은 국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부 단계에 걸친 조율과 특히 조세당국, 사회보장기관, 근로감독관, 관세당국, 출입국 관리기구 및 고용서비스 등 유관기구 및 당국 간협력을 보장해야 한다.
- 13. 회원국은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근로자와 경제단위의 소득보장의 기회를 보호하는 데 토지와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IV. 고용정책

- 14. 공식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회원 국은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제122호, 1964)에 맞게 국가의 고용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롭게 선택하는 양질의 고용을 국가 발전 및 성장전략 혹은 계획의 핵심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 15. 회원국은 다음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를 기반으로 포괄적 고용정책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장려해야 한다.
- (a) 총수요와 생산적인 투자 및 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을 장려하고, 기업신뢰(business confidence)를 지원하며, 불평등을 해소하 는 고용친화적인 거시경제정책
- (b) 고용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증진하며, 구조 전환 절차를 촉진하는 무역, 산업, 조세, 업종별 및 인프라 정책
- (c) 영세 및 중소기업, 기업가정신 및 공식경제로의 전환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히 수립되고 투명하며 제대로 전달된 규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제96차 ILO 총회(2007)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기업의 장려에 관한 결의안과 결론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기업, 특히 우호적인환경 조건을 장려하는 기업정책
- (d)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진화하는 노동시장의 필요와 신기술에 대응하고, 비공식 도제훈련제도 등을 통한 취업 전 교육을 인정하여 공식고 용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 정책
- (e)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고하고 고용시장의 요구에 부 응하는 이주노동자정책

- (f) 고용시장 및 신기술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정책
- (g) 청년층의 학업에서 취업으로 전환을 위한 포괄적 활동 측정
- (h) 특히 장기실업자, 여자, 취업계층 등의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에서 일 (work)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i) 최신 유관 노동시장정보시스템

V. 권리와 사회적 보호

- 16. 회원국은 양질의 고용을 달성하고 비공식경제 종사자의 근로기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효과적인 인식
- (b)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근절
- (c)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 (d) 직업과 고용상의 차별폐지
- 17. 회원국은,
- (a) 종종 비공식경제 내 근로를 특징짓는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근로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비공식경제 내 사용자와 근로자로까지 산업안전보건 보호를 장려하고 확대해야 한다.
- 18.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회원국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비공식 경제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사회보장, 모성보호, 양질의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19. 회원국 사회보장시스템 내에서 국가 사회보호최저선을 구축 및 유지 하고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있어, 회원국은 비공식경제 종 사자와 그들 가족의 수요와 상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0.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은 비공식경제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보장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필요시 이들의 개인부 담 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혜택 및 부담금을 조정해야 한다.

21. 회원국은 기업가정신과 고용기회의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가격의 양질의 육아 및 기타 돌봄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을 장려해야 한다.

VI. 인센티브, 준수 및 집행

- 22. 회원국은 조세와 분담금, 사회·노동규정 및 그 외 법령의 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불이익 제거, 법집행 및 효과적인 제재의조합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3.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등록, 조세 및 법규 준수와 관련한 장벽 등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
- 24. 회원국은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인프라, 시장, 기술, 교육 및 직업능력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재산권 등 공식경제로의 효과적인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 25. 영세 및 소기업의 공식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 (a) 등록비용 혹은 절차기간을 줄이는 기업의 (공식경제) 진입 개혁을 이 행해야 한다.
- (b) 소득세, 부가세 및 사회보험 분담금을 단일 정기 납부방식으로 통합하는 납부정책 등 간소화된 조세 및 분담금 평가·납부 정책을 도입하여 준수 비용을 낮춰야 한다.
- (c) 조달물량 조정과 조달물자 입찰 참여에 관한 훈련 및 조언 제공, 영세 및 소기업에 대한 쿼터 마련 등의 조치를 통해 영세 및 소기업의 공공 조달에 대한 접근을 장려해야 한다.
- (d) 이러한 기업의 규모와 수요에 맞춘, 신용거래(credit) 및 지분투자 (equity), 지급 및 보험 서비스, 보장제도 등 포용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 (e) 기업가정신 훈련 및 맞춤형 사업개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야 한다.
- (f) 사회보정적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 26. 회원국은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준수와 공식 고용관계의 인정 및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메커니즘을 검토해야 한다.
- 27. 회원국은 충분하고 적절한 감독제도를 마련하고 비공식경제내의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장으로 근로감독 적용을 확대하고 비공식경제 내 근로 조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집행기구에 제공해야 한다.
- 28. 회원국은 효과적인 정보제공, 관련 법규 준수 지원 및 관련 주체 역량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9. 회원국은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진정 및 항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30. 회원국은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예방적이고 적절한 시 정조치를 마련하고, 불이행에 대해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행정, 민사 혹은 형사 제재가 충분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VII.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결사의 자유, 사회적 대화 및 역할

- 31. 회원국은 비공식경제 종사자가 단체를 설립하고, 해당 조직의 규정을 따르며, 스스로 선택한 조직, 연합, 연맹에 가입할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 32. 회원국은 사용자 및 근로자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33.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적절한 경우에 비공식경제 내 근로자 및 경제단위에까지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야 한다.

- 34.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비공식경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 이행 및 평가를 할 때,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협의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 35. 회원국과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공식경제 내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 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비공식경제 내 근로자와 경제단위를 돕기 위해 ILO사무국에 지원을 구할 수 있다.

VIII.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 36. 회원국은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의 정기적 협의를 통해,
- (a)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비공식경제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한 성별, 연령 별, 사업장별 및 기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통계를 수집, 분석 및 배포해야한다.
- (b) 공식경제로의 진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 37. 비공식경제에 대한 데이터, 통계 및 지표 생산에 사용되는 개념, 정의 및 방법론의 개발 혹은 수정하는 데 있어, 회원국은 ILO가 제공하는 관련 지침, 특히 그리고 적절한 경우, 2003년 제17차 ICLS(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 채택된 비공식고용의 통계적 정의에 관한 지침 및 이후 개정기준을 적용한다.

IX. 이행

- 38. 회원국은 국가관행에 따라 비공식경제 내 대표적인 회원제 기반 근로 자단체 및 경제단위단체의 대표를 포함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수단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동 권고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국내법규정
- (b) 단체협약
- (c) 정책 및 프로그램

- (d) 정부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간 효과적인 조율
- (e) 제도적 역량 강화 및 자원 동원
- (f) 그 외에 국내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기타 수단
- 39.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국가관행에 따라 비공식경제 내 대표적인 회원 제 기반 근로자단체 및 경제단위 단체의 대표를 포함하는 가장 대표적 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
- 40. 회원국은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의 수립, 개발, 이행 및 주기적인 검토를 함에 있어, 동 권고의 부록에 명시된 비공식경제관련 ILO 및 UN의 협약 또는 권고가 제시하는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 41. 동 권고의 어떤 부분도 ILO의 협약 또는 권고에 의해 비공식경제 종 사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를 축소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42. 부록은 ILO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승인한 개정 부속서는 기존의 부록을 대체하며 ILO 회원국에 전달되어야 한다.